



이용자 입장에서 개인정보 사용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포괄적 동의(One Click Consent)', 또는 민감한 정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만 사전동의를 구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사후동의 배제(Opt-Out)'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태연(법무법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빅데이터 시대, 시민들은 개인정보통제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정보주체들에게 실질적으로 개인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규정들을 규제완화 이슈로 접근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통제권 보장이 되지 않는 사회의 민주주의는 스노든의 폭로 및 최근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등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심각한 위해에 노출되어 갈 수 밖에 없다.

김보라미(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마블 스튜디오 10주년 기념작으로 2018년 4월 개봉한 영화 '어벤저스: 인피니트 워'에는 무려 23명의 히어로가 등장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아이언맨의 존재감은 단연 돋보인다.

사실 토니 스타크는 토르처럼 신화에 등장하는 신도 아니고 헐크나 캡틴 아메리카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심장에 부착한 아크 리액터가 없으면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다. 하지만 몸에 착감기는 웨어러블 로봇 슈트를 입는 순간 그는 천하무적 아이언맨으로 변신한다.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토르처럼 빌딩 전체를 번쩍 들어 올리는가 하면 헐크처럼 초인적인 괴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아이언맨이 서울 상공에서 싸움을 벌이게 된다면 어떨까. 그는 아마 적과 싸우기도 전에 헬멧 스크린에 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 버튼을 누르다가 추락하고 말 것이다. 해외에선 보기 드물지만 국내에선 모든 기업이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 '개별적 개인정보 사전동의(Opt-in)' 때문이다.

1. 빅데이터 시대와 민주주의의 위기

UN 인권인사회는 2017년 3월 22일 ① 개인을 프로파일링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가, 차별을 낳거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인권의 향유에 달리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② 디지털 시대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공유가 상당히 증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재사용, 판매, 다목적 재판매하는데 대해 자유롭고 명시적이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하고 있지 못하며, ③ 기술 발달의 급속한 속도가 정부 기업, 개인이 감시, 감청, 정보수집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프라이버시권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유린할 수 있고, ④ 이는 결국 표현의 자유와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 평화적인 집회결사의 권리 등 다른 인권을 간섭하여 특히 영토 밖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질 때 민주사회 원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오늘날 빅데이터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혁신과 관련되어 언급되는 프라이버시 이슈와 더불어 마이크로 타겟팅 및 봇을 이용한 가짜뉴스 이슈까지, 모두 "민주사회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 이는 오늘날 정보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 발전에 의한,

당신의 개인정보를 내가 수집해도 되겠습니까?

사물인터넷(IoT) 시대에는 전자기기가 다양한 센서를 갖추고 인터넷으로 연결돼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손목시계 등 웨어러블 기기는 건강정보와 위치정보 등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해 운동량이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음성인식 스피커 등 인공지능 서비스는 눈 뜨는 시간부터 먹고 입고 쓰는 것까지 모든 라이프스타일 정보를 축적해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 등은 각종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바로 '개인정보 사전동의'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으로부터 '개별적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약관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고 접속하려고 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 버튼을 클릭해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내가 수집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도 괜찮겠습니까? 당신의 개인정보는 이런저런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

정보수집, 활용, 제공, 연계 등의 처리들이 시민들의 삶과 깊숙이 연계되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슈들이다.

2. 자기정보통제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주체가 보유·행사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자기정보통제권]으로 설명되어 왔다. 한편, 자기정보통제권은 세상과 관계맺는 방식을 통제하는 인간능력의 중심요소로 개인의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점에 주목되어 왔고,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자치라는 가치는 시민들이 스스로에게 갖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 즉 자기정보통제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평가되었다.¹ 스노든의 폭로 이후 UN에서 수차례 "실질적인 자기정보통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민주주의의 중요 가치들이 실현되지 못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것"은 이러한 측면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UN 인권 이사회의 의결내용

UN인권이사회는 빅데이터시대에 침해되는

1. Lessons from the identity trail,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9

관찰겠습니까? 대략 이런 내용들로, 서비스에 따라 처음 한번만 동의를 구하기도 하고 매번 동의를 구하기도 한다.

개인정보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철저히 관리되고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면 다소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당연히 따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런 원칙들과 거리가 있다.

일례로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알렉사, 노래 틀어줘' 이 한마디로 음악 재생이 가능한 것이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쟁력이다. 그런데 만약 노래를 듣고 싶을 때마다 개인 정보 동의를 해야 한다면 얼마나 번거로울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의 운전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주행하는 첨단 장비다. 그런데 만약 횡단보도를 지날 때마다 혹은 파란불이 꺼질 때마다 '지금 출발해도 될까요?'를 물어본다면 차라리 내가 직접 운전하는 편이 수월할지 모른다.

인공지능 스피커나 자율주행자동차 등 각종 사물 인터넷 기기들은 이용자의 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만약 이들 기기에 현행법상 이용약관 고지와 사전동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개인의 불편이 극심해짐은 물론 서비스의 편리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법을 어길 수도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별적 사전동의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과 민사 책임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법제로 평가받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 기업들은 사전에 고지해야 할 장문의 이용약관을 뒤로 숨기고 버튼 몇 개만 클릭하면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용약관을 확인하려면 별도의 버튼을 클릭해서 페이지를 이동하는 방식이다. 대다수 이용자들도 이용약관을 건너뛰고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묻지마 동의'에 익숙해진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또 이해한다고 해도 장문의 글을 읽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전동의를 개인정보 보호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절차로 전락해버렸다.

문제는 이렇게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함에도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해도 사실상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 각 국가들에게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권고를 하였으며, 기업들에게는 "정보주체의 자유롭고, 명시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판매"되거나, "다목적으로 재판매"되거나, "타 기업에 공유되는 피해"에 대응하는 규제, 예방 조치와 구제대책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국경을 넘나들며 거래행위를 하는 거대 기업들이 형성해 가는 세계화된 경제질서속에서, 기업들에게도 각 주권국가만큼이나 큰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국가들에 대한 권고

- (a) 디지털 통신의 맥락을 포함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
- (b) 관련 국가 입법이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준수하는 등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종결시키고 침해 방지 여건을 창출하는 조치를 취할 것.
- (c)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대량의 감시·감청·수집 등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절차, 관행, 입법을 검토할 것.

(d) 국가의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정하게 자원이 할당되고 불편부당한 사법적, 행정적, 혹은 의회의 국내 감독 체제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것.

(e)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감시에 의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개인들에게 국제인권 의무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구제대책을 제공할 것.

(f) 효과적인 제재 및 구제대책을 포함하는 적정한 규제를 개발·유지·시행하여, 개인·정부·기업·민간단체들의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개인정보 수집·처리·보관·이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유린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것.

(g)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개인, 특히 여성은 물론, 아동, 취약 계층과 소수자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 침해와 유린에 대해, 예방 조치와 구제대책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유지할 것.

(h)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기술적인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모든 이에게 양질의 교육 및 평생 교육 기회를 장려할 것.

(i) 기업들에 대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간섭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삼갈 것.

(j) 국가 기관이 사적인 이용자 데이터나 정보에 대한 제공을 요청할 때 기업들이 적정하고 자발적인 투명성 조치를 도입할 수 있게끔 적절한 조치를 고려할 것.

이용자가 사전동의 버튼을 클릭한 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용약관 사전고지와 동의라는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피해 내용이 사전에 고지한 이용약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피해가 크더라도 정부는 이용자인 개인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 개인이 동의한 이후에는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시정을 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 제도 하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후적 조치 정도다.

결국 피해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전동의 버튼을 클릭한 이용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동의 규제를 강화한 결과 정작 개인의 사후 개인정보 통제권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개발 같은 고지사항이 개인정보 양극화 부른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강력해지는 특징이 있다. 기존에 입력한 데이터 이외에도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고 적용하는 과정을 무한 반복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는

더욱 인공지능에 가까워지고, 우리의 일상은 보다 편리해진다.

하지만 수집하는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사전에 동의해야 할 약관도 늘어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한쪽으로 쏠리는 프라이버시 디바이드(Privacy Divide)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첨단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고령자나 장애인, 기기 작동이 서툰 아이들에게는 서비스 이용약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 귀찮아서 건너뛰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원치 않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게 되는 부작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기업들도 곤란하긴 마찬가지다. 강력한 개인정보 규제를 모두 따르다 보면 데이터 수집은 물론 서비스 개발이나 적용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은 불가능을 상상할 때 탄생하는 법인데, 현실적으로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차별이 두려워 시도조차 꺼리게 된다.

이용자 입장에서선 외국 기업의 서비스에 비해 복잡하고 불편한 국내 서비스를 굳이 고집할 이유가

빅데이터 시대, 시민들은 개인정보통제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k) 개인의 자유롭고, 명시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판매되고, 다목적으로 재판매되며 타 기업에 공유되는 피해에 대응하는 규제, 예방 조치와 구제대책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

기업들에 대한 권고

(a)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하여 유엔기업과 인권이행원칙(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에 상응하는 인권존중의 책임을 다할 것과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유, 보관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과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를 적절히 허용하는 투명성과 정책수립

(b) 자유롭고, 명시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판매되고, 다목적으로 재판매되며 타 기업에 공유되는 피해에 대응하는 규제, 예방 조치와 구제대책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

(c) 암호화와 익명화 조치등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통신의 기밀성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기술적 해법을 가능케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독려하며 국가는 그 사용을 간섭하지 않을 것을 요청

나. 국내에서 그간의 논란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12월 11일 “빅데이터

산업발전 전략”을 창조경제 및 정부 3.0의 핵심동력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는 취지”를 골자로 하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다고 비판하였고, 이후 각계각층에서의 현행법위반의 문제제기 때문에, 위 가이드라인은 폐기되었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이 현행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 관계당국은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의 없는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의 개인정보처리를 인정하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014. 12.&2016. 6.)]을 당시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도 “비식별조치”가 과연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더 이상 재식별이 되지 않는 조치]인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큰 논란이 되었다.

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진 실증 보고서로는 유일하게 2017년 4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과제로 SKT가

없다. 경쟁에서 뒤떨어진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서비스 연구에 투자할 여유가 사라진다. 그 결과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개인정보의 개별적 사전동의의 제도는 겉보기엔 개인의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에선 개인은 무의식적인 동의로 인한 사후 통제권 상실을, 기업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과 경쟁력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개알 같은 고지사항, 둔감해지는 보호의식, 습관적인 동의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프라이버시 디바이드는 개인정보 사전동의의 제도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제는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 또한 이용자가 동의만 하면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도 불합리하다. 이대로는 개인도 기업도 모두 패착(Lose-Lose)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행 개인정보의 개별적 사전동의는 형식적인 동의 절차로 인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개인정보 사용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포괄적 동의(One Click Consent)’, 또는 민감한 정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만 사전동의를 구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사후동의 배제(Opt-Out)’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한 개별적 사전동의 방식은 허용되는 조건들을 나열하고 그 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 positive 시스템으로, 세계적으로도 엄격한 규제에 해당한다. 반면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는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업에 개방하되,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하는 사후동의 배제 원칙을 따르고 있다.

사소한 잘못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잘못은 형사처벌보다는 시정명령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처벌의 두려움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우리도 미국처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이 그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마련해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관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 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최종 보고서」가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비식별조치인 KLT 기법을 통한 데이터 결합시 재식별 가능성이 상당한 수에 이를 수 있다는 점(보고서 제67면)이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다. 즉, 완전한 익명에 이르지 아니한 비식별화 조치인 KLT 기법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식별이 되어 이러한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들이 시장에서 통제장치없이 유통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그 유통과정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국책기관의 보고서까지 등장하였음에도, 별도의 보완이나 실증절차없이 기업들의 요구와 창조경제라는 공약실현을 위하여 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실무에 그대로 사용되는 등 강행되기까지 하였다.

위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강행사례는 규제완화를 강조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그간 빅데이터 산업육성만을 강조하는 창조경제 캐치프레이하에 개인정보통제권 보장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한 채,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위험한 정책들이 강행되곤 하였다. 현재 위 가이드라인들은 창조경제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적용이 중단된 상황이다.

3.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쟁점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다시 이름이 바뀌어 유사하게 규제완화정책으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주체에게 충분한 통제권이 부여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민주사회에 대한 위협들은 여러 차례 경고된 바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의 신설규정 중 (1) 가명처리 (2) 프로파일링에 대한 논쟁이 있는 바, 이 제도들 역시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주체들에게 실질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가. 가명처리와 그 처리방법의 신설

가명처리란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자를 처리하여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로서 개인식별자의 연계, 연동가능성 때문에 가명처리된 정보 역시 여전히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념이다.

가명처리에 대하여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안전장치의 하나로써 제안하고 있다. 가명처리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마치 적극적인 활용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오해가 되고



제출하고, 이후 심사를 통해 무효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확인도 없이 ‘모든 이용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이 무조건 불법이 되는 현행 규제가 과연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심사숙고할 시기가 됐다. 이대로 과도한 개인정보 규제가 지속된다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패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마저도 후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시대, 시민들은 개인정보통제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있으나, 가명처리 역시 개인정보통제권의 보장을 위한 안전요건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나. 프로파일링 관련 규정들의 신설

빅데이터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프로파일링 기법들을 활용한 영리목적 또는 선거운동 목적의 마이크로 타게팅이다. 그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직 프로파일링을 전제한 규정들을 두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통제권의 실질화를 위하여 프로파일링의 정의 및 그 허용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고, “프로파일링이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과 예상되는 결과, 프로파일링의 작동원리인 로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 및 심각한 위험이 예정된 프로파일링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 도입 등을 함께 논의하여야 할 시점이다.

4. 빅데이터 시대, 이제는 시민들에게 개인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들에게 실질적으로 개인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규정들을 규제완화의 이슈로 접근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통제권 보장이 되지 않는 사회의 민주

주의는 스노든의 폭로 및 최근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등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심각한 위해에 노출되어 갈 수밖에 없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구호하에 창조경제 정책이 드러냈던 규제완화에 편향된 문제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 당장 그 위험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다목적 강제형식의 주민등록제도]와 [실명제 정책]이 제도가 도입된 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이 지나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안전을 위협하였던 것처럼, [개인정보 규제완화] 정책 역시 시간이 흘러 UN인권이사회 권고에서 예상하고 있듯, 그 해법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기술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좀 더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개인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법들을 섬세하게 고민해야 한다.